2022년 상반기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현황

구분	순번	자 문 내 용	비고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소속기관	1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학교장이 위임받은 사무의 재위임 여부 관련	
	2	교사 영리업무 금지위반 관련	
	3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한 법률 자문	
	4	징계시효에 따른 징계 의결 가능 여부	
	5	비접촉체온계 입찰 건 낙찰자의 낙찰후 의료기가 판매업자 등록을 한 경우 계약체결 가능 여부	
	6	방과후학교 강사료의 채권압류 적용 여부	
	7	해임기간 내 미지급된 사립학교 교직원 소급 인건비 지원 관련	
	8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자문	
	9	○○초 신설학교 토지 매매계약서 검토	
	10	사립학교 시설지원 사무처리와 관련한 자문	
	11	노동조합법 제4조 관련 ‘조합활동’ 질의	
	12	자치법규 개정 관련 법률 자문	
	13	민사소송 판결에 대한 항소실익 여부 관련	

구분	순번	자 문 내 용	비고
	14	단위학교 위임 전결 관련 법률 자문	
	15	공모교장 직 해제 관련	
	16	이행확약서 재체결 여부	
	17	기부채납 협약 이행 법률적 해석(송도지역)	
	18	기부채납 협약 이행 법률적 해석(부평지역)	
	19	사립유치원 손해배상 소송 관련 자문	
	20	공유일반재산 대부료 및 연체료 처리와 관련한 법률 자문	
	21	공사 간접노무비와 관련한 법률 자문	
	22	교사 직위해제와 관련한 법률 자문	
	23	학원의 허위 과대 광고 관련 법률 자문	
	24	○○중 공유지 및 사유지 처리관련 법률 자문	
	25	인천광역시 학교군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제9조 위원회의 직능	
	26	변상금 부과 사무처리와 관련한 법률 자문	
	27	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 관련한 법률 자문	
	28	교육지원청 서비스등록 취소 심판 피청구 건	

구분	순번	자 문 내 용	비고
	29	사회복무요원 공상인정 처분	
	30	학부모부담경비 운영 관련 법률 자문	
	31	교육감 소속 근로자 해임 관련	
	32	○○중 계양방축주택조합간 협약서 이행의 건	
	33	급여환수대상자 사무처리와 관련한 법률 자문	
	34	정보공개 사무처리 관련	
	35	용역업체 폐업신고로 인한 계약 처리	
	36	교육환경평가서 조치결과 이행확약서 체결 조문 검토	
총계	36건		

※ 동일한 자문내용에 대해 2명 이상의 고문변호사에게 자문받은 경우는 1건으로 간주

법 률 자 문 결 과 보 고 서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1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학교장이 위임받은 사무의 재위임 여부 관련	□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교육감의 권한 중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학교장이 교육장(재산관리관)에게 재위임 할 수 있는지 여부 □ 학교장이 위임받은 권한 일부를 교육지원청에 재위임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적극행정 구현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부	□ 재위임 불가 □ 별도의 재위임 없이도 교육장 명의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재위임 불가 □ 교육지원청에서 개별학교의 현황에 맞는 구체적·개별적인 시설사용협약안과 사용료 산출내역서 초안을 작성하여 개별학교에 제공하고 개별학교에서 한전과 시설사용 협약서 체결
2	교사의 영리업무 금지위반 관련	□ 협찬품이 블로그 광고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을 블로그 운영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 광고료를 직접받는 것이 아님 □ 직접 적용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 됨 □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영리업무로 판단되며 겸직허가를 받아야할 것으로 보임. 허가없이 했다면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 됨
			□ 광고료에 해당하지 않음 □ 인터넷 개인방송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상호소통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네이버 블로그 역시 인터넷 개인방송에 해당되고 지침이 적용 됨 □ 광고료를 받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
			□ 광고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블로그 운영은 인터넷 개인방송과는 성격이 상이하므로 지침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서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겸직허가 승인 대상이라고 사료됨.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업무에 종사한 것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
3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한 법률 자문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사람이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학교폭력 피해자에 관한 정보가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는지?	□ 직무 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6. 11.선고 2009도 2669판결)에 의하더라도 위 '국가공무원법' 상의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판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 하 함은 그 요건 중 하나로서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하고, 비밀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순히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성명을 누설한 것은 국가의 기능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상의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음.
			□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인적사항' 은 피해학생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했는지 모르는 다른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학생들이나 타인에게는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라고 보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0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소지가 있는 행위라고 생각됨
4	징계시효에 따른 징계 의결 가능 여부	□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 언제인지? 갑설: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을 전입신고한 날로 볼 경우 징계시효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없다. 을설: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을 경찰 수사개시일로 볼 경우 징계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있다.	□ 징계계시효제도의 목적 및 기간 도과 등 사정에 비추어 공무원 A에 대한 징계요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징계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평가되는 공무원 A의 행위에 관하여 징계의결 요구 내지는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로 평가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 2019년도 징계업무편람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비위행위가 종료된 때를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을 경찰 수사개시일로 볼 경우 수사개시라는 임의적인 기준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되므로 징계의결 요구는 할 수 없음
5	지방계약 관련한 법률 자문	□ 비접촉체온계 입찰 건 낙찰자의 낙찰후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록을 한 경우의 계약체결 가능 여부	□ 모든 투찰자들이 오류를 인정·확인하고 투찰하였으므로 입찰 자체는 유효, 계약체결 가능
			□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판매업신고자만 판매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므로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자격 요건 제한규정은 불필요한 입찰을 막기 위함, 입찰 자체는 유효 계약체결 가능 직접적,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6	방과후학교 강사료의 채권압류 적용 여부	□ 급여 채권압류 업무와 관련하여 법원 결정문에 기재된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 및 각종 수당 등을 대상으로 원천공제하는 내용」에 정기 급여와는 별개로 지급하는 방과후 강사료의 채권압류 적용 여부	□ 방과후 강사료는 교사가 정규교육과정 외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학교로부터 강사료를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등의 급여)로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 급여채권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각종수당이 모두 포함되고, 다만 통근비, 출장여비 등과 같이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은 제외되며 방과후학교 강사료는 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당으로 실비변상적 성격이라 볼 수 없으므로 압류대상이 된다고 사료됨
7	해임기간 내 미지급된 사립학교 교직원 소급 인건비 지원 관련	□ 학교법인 징계위원회 자체 징계로 해임된 교직원이 법원 판결에 의해 신분이 회복됨에 따라 교직원의 인건비 소급 지원을 요청함. 해임기간 내 미지급된 소급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산정 기준」中 징계취소에 따른 소급 인건비 제한 규정 '교육청의 명령·지도에 반하여'의 해석에 대해 의견이 대립됨 - 갑설: 학교법인 자체 징계로 교직원을 해임함에 있어 교육청의 명령·지도 등이 없었으므로 교육청의 명령·지도에 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할청이 소급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 을설: 관할청이 명령·지도를 할 수 없도록 학교법인	□ (을설) 해임이나 파면과 관련하여 교육청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는 관할청의 명령·지도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인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 (을설) 관할 교육청에 징계사실을 알리지 않고 학교법인이 임의로 자체 징계하여 해임한 것으로, 오히려 관할 교육청이 명령·지도를 할 수 없게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소급 인건비는 학교법인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
			□ (절충설) 관할 교육청이 학교법인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았거나 징계처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학교법인의 징계처분과 다르게 명령하거나 지도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학교법인이 소급 인건비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이 교육청에 징계 요구를 하지 않고 임의로 자체 처분한 것은 관할청의 명령·지도에 반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소급 인건비는 학교법인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만, 관할 교육청이 학교법인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았거나 징계처분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 하더라도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을 수용하고 묵인할 여지가 있어 객관적으로 추정되는 관할 교육청의 명령·지도 내용이 모호하다면 관할 교육청이 소급 인건비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8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자문	□ 계약 특수조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가능 여부	□ 이미 확정된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채무불이행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임 적법하게 해지되었음 □ 현품설명서에 명시된 식품 함량과 규격, 성분이 상이한 식품을 납품하거나 납품을 미이행한 사실을ㅜ알 수 있는바, 부정당제재 처분 가능함
			□ 현품설명서와 다른 식품을 납품하거나 납품을 미이행한 사실이 있고 급식재료의 품질과 성분은 이 사건 계약의 중요한 요소이고 계약의 주된 채무의 불이행, 계약의 해지는 문제 없음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해당하는 계약조건 위반 및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이므로 부정당제재 처분 가능함
			□ 이미 확정된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해지의 유효성을 인정하였는바, 업체의 청문과정의 소명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이 판결 내용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않으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므로 계약의 해지는 문제 없음 □ 청문과정에서 고춧가루, 새우젓을 납품 못한 이유로 인천 특정업체가 독점하고 있어 특정업체와 영양교사의 관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으나 입증책임은 업체에 있고, 민사판결 등을 거치면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당한 이유라고 판단하기 어려워 부정당제재 처분 사유는 인정됨
			□ 이 사건 계약이 계약상대자의 부당제한 특약이나 조건으로 계약상 이익을 박탈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계약상대자의 채무불이행이 그 원인이 되었음. 위와같은 사유를 제1심 판결과 항소심 심리과정에서 확인되었음. □ 부정당제재처분 발령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내에 해야하고, 그 기간 내임. 부정당제재 처분 가능함
			□ 5가지 품목의 세부사항 중 일부를 지키지 못한 것이 계약의 중요부분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학교가 업체에 5가지 품목에 대한 다른 선택지를 주지 않았고 계약종료일 2일전 해지 - 학교측 주장대로 계약조건을 위반하였고 그로 인한 계약해지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 5개의 품목 중 일부 조건을 맞추지 못한 것이고 학교측에서도 다른 물품으로 선택지를 제공하지 않았고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계약기간 종료 2일 전에 해지된 것으로 보아 학교측 주장만으로 계약조건 위반 및 계약 미이행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부정당제재처분할 경우 행정심판 및 소송이 진행 될 가능성이 상당함.
9	○○초등학교 신설학교 토지 매매계약서 검토	□ 민영개발사업자인 한들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과의 매매계약서와 관련하여 체약 체결 이후 소유권 이전까지 17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함. 17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경제여건, 조합의 사업추진 상황, 교육청의 재정 현황 등 계약이후 환경을 예측하기 어려움. 계약서 상에 계약 체결 이후 소유권 이전을 경료하기 전, 한들구역 도시개발 진행 상황에 따라 대상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 매매계약서와 다르게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를 계약내용에 명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해당 문구 검토 □ 계약서상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인 대상 토지의 소유권 이전 불가 등 매매계약서와 다르게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리교육청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은?	□ 제2항 제2호에서는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는 다툼이 발생할 경우 그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아 보이므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함. □ 제3항 : 제1항에서는 '해제'와 '해지'의 구분이 필요해 보임. □ 제4항 :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율(연 5%)을 적용하여' 부분을 단순히 '연 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라고 수정해도 무방해 보임. □ 제9조(계약사항 불이행과 손해배상) 관련하여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감액될 가능성이 있어 '위약벌'로 기재하는 것이 유리할 것임. □ 결어: 보내주신 계약서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음.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귀청에 유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길 바람.
10	사립학교 시설지	□ 교육감이 2010~2012년에 제일고에 지원한 시설비	□ 사립학교에 시설비를 교부할 때 '향후 5년 이내 학교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원 사무처리와 관련한 자문	(총 42억 상당)에 대해 이전을 이유로 환수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이전 재배치 계획이 없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현재 이미 5년이 경과하였으로 달리 교부조건 위배사항이 없는 이상 이미 지원한 시설비를 환수할 근거가 박약함. 사학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예산투입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한다면 교육감이 사학기관에 시설비 등을 교부하면서 징구하는 서약서상에 학교 이전이나 재배치가 금지되는 기간을 보다 장기간으로 정하는 등 그 교부 조건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지원 목적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 조치를 권고할 권한' 이 있으나, 제일고의 경우 이미 지원 목적에 맞추어 본관동 개축을 완료하였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임.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사안의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조건을 붙인 바가 없으므로, 이 규정을 들어 보조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보조금 환수는 행정행위 이후의 사유를 들어 수익적 행정행위를 사후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으로 행정상 '철회' 임. 철회는 벌령상 근거가 필요하나, 보조금 지급 후 여러 제재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달리 반환에 대한 근거 규정을 찾을 수 없음. 또한 각서상 '향후 5년 이내 학교 이전 재배치계획이 없음' 으로 서약하여 공법상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여지가 있으나, 2021년은 교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부시점 기준 5년이 도과하여 교부조건에 위배되지 않음. 따라서,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근거 없이 반환요구는 어렵다고 사료됨.
11	노동조합법 제4조 관련 '조합활동' 질의	□ 노사 상호 간 협의 진행 중 담당공무원이 퇴근시간이 되어 자리를 이석하였다는 사유로 노조 집행부 A씨 등이 사무실 내에서 의자를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한바, - 이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되는지 또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문의	□ 퇴근시간 이후 협의를 중단하겠다고 일어서 있는 상태로 업무방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음 □ 노동조합법 제4조의 정당한 행위로 인한 위법성 조각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그 단서에서 '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를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A씨의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는 없음
			□ 이 사안의 경우 업무시간 종료로 퇴근하는 것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에 해당되기 어려워,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임 □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고성을 지르고 기물(접이식 의자)를 발로 차는 등의 행위가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 으로 인정될 수 있어 보이므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임
12	자치법규 개정 관련 법률 자문	□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본청 한시기구 설치에 대한 사항을 교육규칙만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 한시기구 설치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직접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이 사건 조례 제3조는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조례로 사료되며,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에 대한 사항은 조례에서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 대통령령 제4항에서 조례에 의하여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한 것은 한시기구의 설치근거까지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한시기구의 설치는 조례에 근거해야 함
			□ 한시기구의 설치는 조례에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치'에 관하여 교육규칙만으로 제정하는 것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임
			□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에 대한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 재위임이 허용됨. 따라서 조례에 한시기구 설치 규정을 정하였을 경우, 교육규칙만으로 한시기구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음
			□ 조례에 근거하여 상위법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규칙으로 한시기구 및 한시정원을 규정할 수 있다고 사료됨
			□ 한시기구의 설치여부 등 중요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한시기구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13	민사소송 판결에 대한 항소 실익 여부	□ 학생안전사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결과 항소 여부(항소 실익)에 관하여 - 항소심에서, 교육청이 이 사건 책임비율을 60% 이하로 낮추는 취지의 주장을 할 경우 실익이 있는지, - 항소심을 진행한다면 교육청이 책임비율을 낮추거나 또는 어떤 주장을 해볼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	□ 항소실익 낮음. 재 판부에서는 "원고 역시 사고의 발생이 예상됨에도 이 사건 사고동작을 그대로 시도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는 바, 만약 항소심에서 원고측의 과실을 추가로 주장하려면 기존에 인정된 사정들에 더하여 새로운 사정들이 밝혀져야 할 것임. - 다만 이러한 새로운 사정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1심 판결의 책임비율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으로 인정된 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항소를 하더라도 그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음. 항소심 진행시 항소실익이 낮고, 항소하였을 경우 발생할 사회적 비난가능성의 측면도 고려되어야 함.
			□ 항소실익 낮음. 손해배상의 책임범위를 정하는 것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므로, 그것이 현저히 잘못된 것이 아닌 이상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함. 따라서 항소심에서 피고 교육청의 책임범위를 60% 이하로 낮추어 달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익은 없어 보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경우, 원고의 과실 비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어임. 특별히 원고의 과실에 대한 증거가 새롭게 발견되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다른 주장을 할 것은 없어 보임. 1심 재판부가 피고 학교안전공제회의 지급 의무와 피고 교육청의 지급 의무를 별도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지급 의무는 별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개의 것으로 보임.
			□ 항소실익 낮음. 학생의 과실이 아주 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유사 판례의 경우에 비추어 보아 피고의 과실비율을 60~70%를 인정해 주고 있음. 이 사건 관련하여 판결이 과다하게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 주었다 보기는 어렵고, 달리 책임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항소한다고 하여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어 항소실익이 낮다고 보여짐.
14	단위학교 위임 전결 관련 법률 자문	□ 단위학교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교사의 복무(조퇴, 외출, 지각 등)를 같은 교사(부장교사)가 승인할 수 있는가?	□ 교사의 복무(조퇴, 외출, 지각 등)에 대한 결재가 특별히 학교장만이 결재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위임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장교사가 학교장의 전결위임을 받아서 승인할 수 있고, 이를 학교장이 정한 사무전결규정에 정할 수 있다고 사료됨.
			□ 학교의 교무를 총괄하는 교장은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에서 '교무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렇다면 A학교 교장은 이 사건 위임전결 규정을 통해 '교무'중 '소속 교사에 대한 복무관리사무'를 보직교사(부장교사)에게 분담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됨.
			□ 권한의 위임은 근거규정이 명확해야하므로 예시한 위임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전결규정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판단함.
			□ '위임전결'은 행정청 내의 의사결정권을 보조기관에 위임하여 당해 보조기관의 결재로써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확정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권한의 이전이 없음. 그래서 '위임전결'에는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음. 따라서 단위학교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부장교사가 교장의 전결 권한을 내부적으로 위임받았다면,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교사의 복무를 승인할 수 있다고 사료됨.
15	공모교장의 직 해제 관련	□ 교장공모제로 임용된 공모교장이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국가공무원법위반으로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는데 이를 근거로 공모교장의 직을 해제했을 때 적절성 여부	□ 법률적 근거를 찾기는 힘들지만 형의 선고에 따라 직권으로 강임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해석 또는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 당해 학교에 근무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고 교육공무원으로 치명적인 범죄로 보이므로 해제 가능
			□ 정상적인 학교 근무가 어렵고 학교에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소명절차 후 인사위원회 심의 거쳐 직 해제 가능
16	이행확약서 재체결 여부	□ 학교 주변 대규모 공사로 인한 교육환경평가와 관련하여 학교와 사업시행자간 체결한 이행확약서를 학교의 요구에 의해 다시 체결할 수 있는지?	□ 이행확약서는 당사자간 합의만 있으면 가능하나, 사업시행자측에서 학교의 이행확약서 재체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 사업시행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조망권 침해로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인한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학교 교실 증설은 사용승인 해주지 않도록 하여 아파트 완공 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사업시행자가 이행확약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였다면, 학교가 그 외 추가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의 재협의 요구는 타당하지 않을 것임 □ 사업시행자가 이행확약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교육환경평가서 승인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는바, 이 경우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함
			□ 학교가 이행확약서의 재체결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기존 협약서에 교육환경 피해 대책 마련이 있는 점, 약정사항, 사업시행자측 부담 가중 등의 사유) □ 다만, 사업시행자가 확약서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교육청에 관련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음 ※ 교육부 고시 및 처분 관련 법 적용이 맞지 않음
17	기부채납 협약 이행 법률적 해석(송도)	□ 학생배치계획 검토는 학생을 유발하는 동일 통학구역 내 인근 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 부분까지 포함하여야함.	□ 기부채납협약서 작성 당시 명시된 사업지구 내 건축사업에 한정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며, 명시되지 않은 구가 개발사업 추진 시 학생유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 당초 학교계획 및 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주거형 오피스텔 추진 시 유입되는 학생의 안정적 배치여건 마련 등 학생배치계획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바, 기존 협약서에서 명시한 해당개발사업의 행정절차 진행 시 이의제기나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협약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추가 개발사업 추진 시 유입되는 학생의 안정적 배치여건마련을 위한 종합적 학생배치계획 검토를 근거로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해당개발사업의 행정절차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협약 미이행에 해당되지 않음)
			□ 사업시행자가 기존 협약서 체결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개발사업 추진으로 학생 수가 증가되는 시점에서 교육청은 기존 협약에 구속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임. □ 협약 체결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종합적 학생배치계획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면 해당개발사업의 행절절차에 대한 부적합 또는 조건부여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됨.
			□ 기존 협약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과 관련한 행정절차에 대하여 부적합 의견제시나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함 □ 다만, 해당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절차에 대해 부적합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협약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사료됨.
18	기부채납 협약 이	□ 학교시설 기부채납 협약에 대하여 조합이 학교시설	□ 기부채납 대상은 현물로서의 증축시설 그 자체로서, 학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행 법률적 해석(부평)	증축 협의 당시 추정한 학교용지부담금보다 초과한 기부채납 협약에 대한 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 협약 제10조에 의거, 위약 시 조치사항으로 인천교육청에서 소 제기,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승인 철회 및 공사 중지 등 부개서초북측구역 조합의 기부채납 이행을 위해 강제할 수 있는지	교용지부담금은 주관적·내부적 동기에 불과하여 증축시설 규모 자체에 변동이 없는 한, 증축비용(협약금액)은 변경 합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조합의 위약 시, 인천교육청은 협약서 제10조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승인 철회 및 공사 중지 등을 관할청에 요청하거나 공동주택의 입주시기 조정 또는 사용검사 승인 불허가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사료됨
			□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 소유재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유권 즉 사용·수익권 및 처분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양도하는 것이므로, 조합이 학교시설 증축 협의 당시 추정한 학교용지부담금보다 초과한 기부채납 협약에 대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 또는 권리가 귀청에 없어 보이며, 기부채납은 증여계약으로 당사자 일방의 의무불이행이 있다면 기부채납을 해제할 수 있음. □ 협약 제10조에 의거 조합의 협약의무 불이행 시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승인 철회 및 공사 중지 등을 관할청에 요청하거나 공동주택의 입주시기 조정 또는 사용검사 승인 불허가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사료됨
			□ 기부채납 협약 당시 추정한 학교용지부담금보다 기부채납 소요비용이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금액 조정할 의무는 없으며, 금액 조정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재량으로 판단할 사항임. □ 조합의 기부채납협약 불이행하는 경우, 협약 제10조에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의해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소제기,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승인 철회 및 공사 중지 등을 관할청에 요청할 수 있음. 다만, 기부채납협약은 민법상 증여로 조합에서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기부채납협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음.
19	사립유치원 손해배상 소송 관련 법률 자문	□ 피고는 “국가” 혹은 “지자체” 인데, 공무원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은 소송요건 흠결 사유가 아닌지? □ 공무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과연 적법한 소 제기인지? □ 기각을 주장하는 것이 나을지, 각하만 주장하는 것이 나을지? □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준비해야 할 증거 및 서류가 무엇인지? □ 교육청이 소송 대응하는데 관련된 법적 근거가 무엇이 있을지?	□ 청구의 기각사유에 해당할뿐 소송요건의 흠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적법함 □ 기각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원고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 □ 뚜렷한 근거규정을 찾아보기 어려움
			□ 소송요건의 흠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적법함 □ 기각을 주장 □ 원고의 주장 중 손해발생 사실을 반박할 자료 □ 근거규정을 찾아보기 어려움
			□ 소송요건의 흠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적법함 □ 기각을 주장 □ 원고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 □ 근거규정을 찾아보기 어려움
20	공유일반재산 대	□ 공유일반재산 대부료 및 연체료 처리와 관련한 법	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하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부료 및 연체료 처리와 관련한 법률 자문 요청	률 자문 가. 공유 일반재산 대부료, 연체료 변상금 미납으로 인한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 사안인지? 나. 지급명령 신청이 안된다면, 소멸시효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어떤방법으로 시효중단해야하는가? 다. 지급명령 신청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것인지? 라. 미수납금을 받을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떤것인지?	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납입고지를 하면 시효중단이 된다. 다. 지급명령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라.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강제징수로서 해당 당사자의 재산에 따라 압류를하고 이후 매각·추심 및 청산의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가. 일반재산의 대부료 징수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따라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대부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납입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 지급명령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라. 독촉과 압류처분하는 방법과 부동산이나 금융계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절차 고려.
			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수 있으므로 가능하지 않다. 나. 「민법」중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 라. 간편한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한다.
21	공사 간접노무비와 관련한 법률 자문 요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사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결정 시, 간접노무비의 계산방법 3가지 중에서 현장관리사무소 및 간접노무비 대상인원이 없는 공	□ 현장관리사무소도 없고, 보조업무가 인정되기 어려운 단순 전기공사현장의 경우에는 실제로 간접 '노무량' 자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접반영방법을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사현장임이 명확히 예견되어 간접노무비율 0% 적용으로 입찰 집행 후, 낙찰업체로부터 간접노무비 0원에 따른 민원 발생 시 문제될 수 있는지요? - 갑설 : 현장관리사무소가 없어도 간접노무비율 적용 가능 의견 '3) 그 밖의 보완적 반영방법에 따라 산출한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는 재량행위이므로 현장관리사무소 유무 및 간접노무비 대상인원과는 상관없이 간접노무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을설 : 현장관리사무소가 없으면 간접노무비율 적용 불가 의견 '1) 직접반영방법 또는 2) 비율분석방법에 따른 계산을 원칙으로 하되, 1) 또는 2)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 3) 그 밖의 보완적 반영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1) 및 2)가 현장관리사무소가 있음을 전제로 하기에, 1)또는 2)에서 파생된 3)도 현장관리사무소가 있음을 전제로 함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현장관리사무소가 없는 공사현장은 3)방법의 간접노무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적용하여 간접노무량이 없어 간접노무비를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 보완적 반영방법으로 일의적으로 간접노무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현장관리사무소가 없어 간접노무량이 인정되지 않는 현장에 대하여는 보완적 방법이 아니라 직접반영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을설)
22	교사 직위해제와 관련한 법률 자문	□ 교사의 직위해제에 있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제1항 제6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타당성 및 적절성 여부	□ 이 사건 해당 교사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직접 직위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공무원법 제51조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징의 의결을 요구하면 그에 따라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직위해제'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사료됨
			□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동료 교사를 강제추행한 행위는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결국 직위해제의 여부는 해당 교사가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것인지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교사의 평소 업무 등의 사실관계를 고려하시어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바람
			□ 직위해제 처분 사유가 있다고 사료됨.
			□ 직위해제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수사기관에 선입견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23	학원의 허위 과대광고 관련 법률 자문	□ 특정 메이크업 학원의 '내신 8등급 학생 합격' 광고와 관련하여 '내신 8등급'을 해석함에 있어서 실제 대학 입학 전형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성적만 인정해야 하는지, 고등학교 전체 성적 중 다수의 과목이 8등급 이하의 성적이므로 문주 자체는 오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학생과 학부모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내신 8등급'이라 함은 학교 전체 성적 중 다수의 과목이 8등급 이하의 성적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보통인 점을 고려해 볼 때, 해당 광고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9호의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의 광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움.
			□ 해당 광고는 그 학생이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8등급 이하의 성적을 받았음에도 학원에서 집중교육을 받고 대학교에 합격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문구가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24	○○중 공유지 및 사유지 처리관련	□ 건물 증축을 위해 학교 공유지분자(개인) 및 미등기 토지(사유지)의 사용권원 필요 여부	□ 사용권원 확보를 해야 증축이 가능하다는 의견 □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의거 등기소에 소유권 보존등기 신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법률 자문	□ 미등기토지(사유지)의 점유시효취득에 따른 소유권 보존등기 가능 여부 □ 다항: 점휴시효취득이 불가능할 경우 토지소유권 또는 사용권원 확보 방법 등 문의 육청에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지?	청 권유. 등기소에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된다면 소송을 통해 점유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다는 의견 □ 토지는 사용권원확보 내지 소유자의 사용 동의가 있어야 증축이 가능하므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
			□ 남00 사용권원은 필요없으나 미등기토지 김00의 사용 권원은 취득해야 한다는 의견 □ 점유시효취득이 불가능하다는 의견 □ 최초소유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정부기록보존소에 보관되어 있는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최초의 토지소유자로 볼수 있음) 찾아 순차대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및 소유권 보존등기를 거쳐야 함. □ 공유지의 경우는 교육감 지분이 과반 이상이므로 사용에 문제 없으나 미등기 사유지는 사용권원 확보 필요 □ 토지대장 상 최초 소유자 및 상속자 확인 불가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 판결 받아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능
25	인천광역시 학교군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제8조 위원회의 직능	□ 현재 시행하는 초등학교별 중학교군 지정에 따른 입학추첨제가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 배정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직능에 해당되는지 여부 □ 배정방식 변경이 상대적으로 원거리 초등학교 학	□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를 배정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의 중학교 입학에 의한 것으로 교육장의 재량권의 범위내에 있다고 보여짐. 현재의 배정방법으로는 근거리에 거주하는 학생이 상대적으로 원거리 학교에 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안전성에 침해를 받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위번성 여부	아니면 현재의 배정방법은 위법하지 않다. □ 입학방법을 정하는 것은 교육장의 재량이므로 교육장 소속인 위원회의 직능으로 근거리 학생을 우선 배정하는 것은 타 학생과의 관계에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 위원회의 직능으로 근거리 학생을 우선 배정하였다고 해서 원거리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입학추첨관리위원회는 교육감이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추첨에 관한 사항만 관장할 수 있을 뿐, 1지망 초과교에 대한 배정방식의 변경은 교육감이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입추위의 직능을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됨. □ 1지망 초과교에 대해 모든 지망자의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없음은 부득이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적법하게 이루진 배정이라면 지정중학교 중 근거리 배정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학생의 권리침해나 배정방식이 위법하다고는 보기는 어려움.
26	변상금 부과 사무처리와 관련한 법률 자문	□ 한전 약관에 따라 체결된 무상사용허가가 효력이 있는지, 효력이 없을 경우 변상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용료(소급)를 부과해야 하는지? □ 효력이 있을 경우 계약 종료 기간이 미도래 했거나 학교시설물의 존속기간 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 현시점에서 유상사용허가 계약으로 변경계약이 가능	□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이나 사용료를 소급하여 부과한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면 비록 계약 종료기간이 미도래 했거나 학교시설물의 존속 기간중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사용·수익허가를 불허하고 장래에 향하여 유상사용 허가로 변경할 수 있다고 사료됨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한지?	□ 학교와 계약에 근거하여 점유하고 있는 이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변상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보이지 않음 □ 위 사안의 경우 계약의 기초 또는 내용에 포함되었던 한전의 약관의 변경이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료 징수 또는 유상사용 허가 계약인 임대차 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임
			□ 2017.1.1.부터는 유상으로 제공받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부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무단점유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는 어렵다는 의견임 □ 현 시점에서 유상 사용허가 계약으로 변경계약이 가능하다는 의견임
27	학원 설립 · 운영 등록 신청 관련한 법률 자문 요청	□ 관내 학원 설립 · 운영 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3층에 학원이 있고, 4층에 유해업소인 생활형숙박시설이 있음. 해당 건물은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상이며,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아래 층에 있음. 다만, 3층과 4층 사이에 PIT공간(배관 시설 등)이 있음. 이에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제2호의 "유해업소 바로 아래 층"을 건축물 대장 상 3층인 학원이 있는 층으로 보아 학원설립 · 운영등록신청 반려 처분이 가능한 지? (갑설) 유해업소 바로 아래 층은 학원이 있는 층으로 보아 "학원 설립 · 운영 등록 불가" (을설) 유해업소 바로 아래 층은 PIT공간이 있는 층으로 보아 "학원 설립 · 운영 등록 가능"	□ (갑설) "학원 설립 · 운영 등록 불가" 타당
			□ (갑설) "학원 설립 · 운영 등록 불가" 타당 분쟁 소지가 없는 방법을 확정할 수 없음
			□ (을설) "학원 설립 · 운영 등록 가능" 타당. 다만, 학원과 유해업소의 수직거리가 6미터 이상일 때 가능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28	교육지원청 서비스표등록 취소심판 피청구 건	□ 서부교육지원청이 사용중인 서비스표 등록건에 대해 취소를 신청한 특허심판이 피청구됨. ❍ 교육브랜드 「edu-sherpa」를 서비스표 등록후 청사 내/외부 시설물, 각종 책자, 인터넷 페이지 등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취소 심판 청구 대상이 될수 있는지? ❍ 우리 지원청이 제출할 답변서(안)의 내용 및 형식에 대한 법률검토	□ 취소심판 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서비스표는 무형의 서비스를 표장의 대상으로 하는 것임. 서비스 자체에 서비스표를 직접 사용할 수 없음. 청사 내외부 시설물, 각종 책자, 인터넷 페이지 등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온 경우에 귀 교육청의 교육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 2011.7.28. 선고 2010후 3080 판결 참조)
29	사회복무요원 공상인정 처분	□ 지원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이 점심식사를 위해 자택으로 자전거를 타고가던 중 넘어져 후방십자인대 견열골절상을 입어 수술 및 입원진료를 실시하고 공상 인정 처분을 요청함. ❍ 점심식사를 하러가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어 병역법상 공상 인정 처분 이 가능한지?	□ 공상 처분 가능 점심시간에 자택식사를 관리자가 허락함. 매일 일상적인 경로로 집을 왕래함. 점심시간 이동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됨.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 아님. 근무지 무단이탈아님. 사적인 행위가 원인아님.
			□ 공상 처분 가능 사안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관리자의 허락하에 인근자택으로 점심을 먹으러 가기 위해 자택으로 향하던 사고는 공무수행을 위한 휴식중의 사고라 볼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자전거 사고로 인한 넘어짐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을 중과실이라고 할 수 없고 근무지 무단이탈로 볼수도 없을것으로 판단되어 공상 인청 처분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공상 처분 가능 근무지 관리자의 허락을 받고 본인에게 부여된 점심시간동안 일반적인 경로를 따라 본인 집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빗길에서 자전거 미끄러짐 사고로 인해 골절상을 당했다. 이는 사업장 밖의 식사장소를 이용하기 위해 이동시간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휴게시간으로 간주하는 대법원 2004두6549판결과 같이 병무청 훈령 60조 1항 별표4 기술된 휴게시간 중 일어난 사고로 판단함이 적절하고,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건데 본건의 사회복무요원 또한 공상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30	**학부모부담경비 운영 관련 법률 자문 요청**	□ 본교 야구부는 학교체육기본계획(인천교육 2021-30호)에 따라 100% 학부모부담금재원으로 자체 학교운동부 지도자 4명을 채용하여 운영중입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의 경우 학부모부담경비 납부 동의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납입을 지연하거나, 납입을 거부하여 지도자(근로자)의 임금 일부가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음. 향후 학	□ 불납결손 처리할 것은 아니고 다음 해에 이월하여 분할 집행하는 방법으로 처리함이 상당함 □ 미납금액의 지급을 독촉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기미납금액에 대하여 지급명령 등의 민사상 청구를 통해 시효소멸을 방지하고 재원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봄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교의 지속적인 납입요청에도, 계속적으로 운동부 인건비 등 학부모부담경비 미납액이 발생할 경우... 1)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제31조에 의거 불납결손 처리 가능 여부 2) 고의적으로 미납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급명령, 소송 등의 방법을 통한 채권확보가능 여부 및 방법	□ 불납결손 처리할 것은 아니고 다음 해에 이월하여 분할 집행하는 방법으로 처리함이 상당함 □ 미납금액의 지급을 독촉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기미납금액에 대하여 지급명령 등의 민사상 청구를 통해 시효소멸을 방지하고 재원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봄
			□ 수납하지 못한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할 수 있고, 시효중단조치를 취하면 단기소멸시효는 피할 수 있음 □ 강제집행 절차에 관해서는 교육에 관한 철학의 문제로 수익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절차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운동부에서 배제하거나 다른 학교 회계에서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봄
31	교육감소속근로자 해임관련	□ 이중징계 해당여부 □ 해고가능 및 해고예고 제외사유 해당 여부	□ 이중징계 해당안됨, 해고가능 □ 해고예고 제외사유 적용 안됨
			□ 이중징계 해당안됨, 해고가능 □ 해고예고 제외사유 적용 가능
32	○○중학교-계양방축주택조합간 협약서 이행의 건	□ 조합측에서 계속 이행을 미루게 될 경우 한 강제처리방법은 있는가	□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가능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 철거공법을 이유로 협약서상의 요구사항을 일방파기할 경우 법적인 절차는?	
33	급여환수대상자 사무처리와 관련한 법률 자문	□ 급여환수대상자가 환수액을 끝까지 납부 하지 않는 경우『민사소송법』462조 지급명령절차로 환수를 할 수가 있는지? □ 『민사소송법』462조 지급명령 외에 강제적으로 환수를 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는지? □ 본교에서 급여환수대상자의 현 소속교(경기도 소재 B고등학교)로 급여환수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 할 시, 『형법』제307조에 따른 명예훼손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벌칙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지? □ 본교에서 급여환수대상자의 현 소속교(타시도 소재 B고등학교)로 급여환수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 할 시, 현 소속교(타시도 소재 B고등학교)에서 공문을 근거로 급여환수대상자의 월급여에서 환수액을 원천징수 할 수 있는지?	□ 과다지급분은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제일 간이한 절차인 지급명령절차로 환수 가능함 □ 타시도 소속 학교로 공문을 시행할 시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는 없으나, 타시도 소속 학교에서 임의로 급여 환수대상자의 보수를 공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익이 없는 협조공문이 될 것임
			□ 급여환수대상자를 상대로 한 민사절차(지급명령 등)를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함 - 타시도 소속 학교로 환수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음
			□ 교육청의 환수금 결정·고지를 한다음 환수대상자가 납부해야하며,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해야 함 □ 교육청은 민사소송으로 환수의무자에게 환수금 납부 의무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으며,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을 뿐임
34	정보공개 사무처리 관련	□ 2020학년도 학교운동부 징계에 대한 내용을 공개요청하였으나 개인 징계에 대한 내용이므로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공개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가 특정 개인의 징계에 관한 내용이라면,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6호 본문 소정의 ‘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에 해당하므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사료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됨.
35	**용역업체 폐업신고로 인한 계약처리**	□ 현황 - 개인사업자(학생 건강검진 용역계약 치과의원) 병환으로 폐업신고 - 신규 개인사업자 새롭게 대표자 및 사업자번호 등록하여 개원(위치, 병원명 변동없음) - 기존 계약자는 신규 사업자에게 기 수행한 건강검진 용역내용 및 비용에 대한 청구권을 신규 사업자에게 넘겼다고 학교로 연락 **□ 질의사항** - 위 두 사업자간 양도양수 가능 여부 - 양도양수 가능하여 서류 제출 받을 경우 공증이 된 서류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양도양수 적법할 경우 양수 사업자와 변경계약 가능 여부 - 양도양수 적법할 경우 기존 폐업신고사업자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부정당제재 시행 여부	**□ 위 두 사업자간 양도양수가 가능한지 여부** 채권양도로서 기존 치과의원에서 건강검진 용역을 한 내용에 따라 인천만수북초등학교에 청구할 비용에 대한 채권양도라 할 것이며, 이는 가능합니다. **□ 양도양수가 가능한 경우 공증이 된 서류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위와 같은 채권양도의 경우 채권자인 기존 치과의원에서 인천만수북초등학교에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위 내용증명에는 기존 치과의원과 새로운 치과의원 사이의 위 용역비용 청구권에 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 양도양수계약서는 공증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양도양수가 적법한 경우 양수 사업자와 변경 계약은 가능한지 여부** 위와 같은 기존의 용역내용에 따른 비용 청구에 대한 양도양수와 별개로 인천만수북초등학교에서는 새로운 치과의사와 다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왜냐하면, 기존의 치과의원은 폐업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용역계약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변경 계약도 가능 **□ 양도양수가 적법할 경우 기존 폐업신고사업자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부정당 제재 시행은 가능한지 여부**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기존 폐업신고사업자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부정당재제 시행이 가능한지 문제되는데, 기존 치과의원이 의사의 병환으로 폐업하였고, 새로 등록한 치과의사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기존의 건강검진 용역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기존 치과의원에 대한 계약보증금 세입조치나 부정당제재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공증 여부를 별론으로 하면 해석상 (을설)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양도양수가 가능한지 여부 보내 주신 질의 내용 답변서와 같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이 상대방에게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거나 개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승계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구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신사업자가가 포괄승계나 상법 영업양도양수방법으로 구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신사업자가 승계하는 경우에는 신사업자가 모든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양도양수 가능하여 서류제출 받을 경우 공증이 된 서류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반드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 **양도양수가 적법할 경우 양수사업자와 변경계약 가능 여부** 양도양수가 적법할 경우 양수사업자와 변경계약이 가능합니다. □ **양도양수가 적법할 경우 기존 폐업신고사업자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부정당 제재 시행여부** 변경계약이 가능하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보증금을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할 필요는 없음
36	교육환경평가서 조치결과 이행확약서 체결 조문 검토 요청	□ 이행합의서 체결 시 각 조문의 내용이 해당 공사로 인한 학교 전반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예기치 못한 피해발생 시 피해보상 등 기타 문제해결에 제한을 받게 되는지의 여부 판단	□ 보상의 범위에 대한 확대 필요 □ 이행확약에 대한 미이행 시 강제수단 조치 조항 추가
			□ 이행확약에 대한 미이행 시 강제수단 조치 조항 추가 □ 조문 내용의 용어 정리
			□ 안전 보완 추가조치 요구 필요성 제기 □ 소송 발생 시 교육청 소재지 관할 법원 선정에 관한 사항
			□ 월 전체 연료비에 부가가치세, 기계교체비 등을 포함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이행합의서 이행 중 조문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남부초등학교와 재개발조합 간의 조문 해석이 상이하여 합의서 이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문 해석에 대한 자문 요청
			□ 월 전체 연료비에 부가가치세 등은 원인이 되는 요금으로 당연히 연료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됨